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재 정 경 제 부 관 구 윤 철

●대통령령 제3645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로 한다.

별표 3 중 1108란 및 350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식품용	0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징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200,500톤
3505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식품용[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로젠)을 제외한다] 및 사료용(프리젤라티나이징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으로 한정한다.	0	
3505	20	글루(glue)	식품용	0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2709.00란, 2711.11란 및 2711.21란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8,000톤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들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진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	90	*기타	과실로 한정한다.	5	10,000톤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10,000톤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	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과당시럽	0	3,000톤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	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1804	00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0	수입 전량
1805	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수입 전량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			

		<p>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1901	90	<p>기타</p> <p>*1. 맥아 추출물(extract)</p>	0	600톤
2008		<p>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2008	20	*과인애플	15	8,000톤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7	<p>혼합물</p> <p>1. 과실 각테일</p> <p>*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p>	20	

		에 넣은 것		5,500톤
		*나. 기타		15
		*2. 기타	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2008	99	기타		
		*6. 기타		15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7,500톤
2009	2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2009	29	*기타		0
2009	3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1,000톤
2009	3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레몬주스	20
2009	39	*기타	레몬주스	20
2009	4	파인애플주스		
2009	49	*기타		20
2009	7	사과주스		700톤
2009	79	*기타		15

2009	89	기타				
		<p>*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와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견과류 주스</p>	딸기주스,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기타 견과류 주스는 제외한다.	20	11,000톤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0	20,000톤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6,5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2711 13 부탄

0

0

수입 전량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0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별표 11]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29,000톤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33,500톤
0804	50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망고(mango)(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8,500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 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몽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바나나 등 3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8월 15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